

2020년도 제1회 철원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0년도 제1회 철원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3일

철원군인사위원회위원장

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

가. 선발예정인원

시험명	시험방법	직급	직 렬	직 류	선 발예정인원
제1회 임용시험	계			2개	7명
	경력경쟁 임용시험	9급	시설	일반토목	4
				건 축	3

나. 직류별 시험과목

시험명	시험 방법	직급	직 렬	직 류	과목수	시험과목(1·2차 시험)
제1회 임용 시험	경력경쟁 임용 시험	9급	시설	일반토목	3	물리, 응용역학개론, 측량
				건 축	3	물리, 건축계획, 건축구조

2

시험방법 및 시험시간

가. 시험방법

- ① 서류전형: 응시자격, 가산점 등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
 - ② 제1·2차 시험(병합실시): 선택형 필기시험(매 과목당 100점 만점, 과목별 20문제, 4지 1선택형)
 - ③ 제3차 시험: 면접시험
- ※ 전(前)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나. 시험 시간

시험명	시험방법	직급	직렬	직류	과목수	시험시간
제1회 임용 시험	경력경쟁 임용시험	9급	시설	일반토목	3	10:00 ~ 11:00(60분)
				건축	3	

다. 합격자 결정방법 :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

3

시험문제의 출제

- 철원군 자체출제: 문제 비공개(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.)

4

응시자격

가. 응시 결격사유 등(기준일: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)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에 해당하는 자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 또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

1.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2.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.

○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○ **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**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
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나. **응시연령**

○ **9급: 18세 이상(2002. 12. 31. 이전 출생자)**

다. **성별: 제한없음**

라. **거주지 제한**

공고일 전일까지 철원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

※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,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.

※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“개인별주민등록표”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재외국민(해외영주권자)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.

시험명	직급	직렬	직류	제한사항
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	9급	시설	일반 토목	기술사: 토질 및 기초, 토목품질시험, 토목구조, 항만 및 해안, 도로 및 공항, 철도, 수자원개발, 상하수도, 농어업토목, 토목시공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지질 및 지반, 건설안전, 교통, 광해방지 기사: 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토목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응용지질, 건설안전, 교통, 광해방지 산업기사: 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토목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조경, 지적, 건설안전, 교통
			건축	기술사: 건축전기설비, 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품질시험, 건설안전, 소방 기능장: 건축일반시공, 건축목재시공 기사: 건축설비, 건축, 실내건축, 건설안전, 소방설비 산업기사: 건축설비, 건축일반시공, 건축, 건축목공, 실내건축, 건설안전, 소방설비

○ 해당 자격증(면허증)을 보유한 자 및 해당 시험 최종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까지 취득예정자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- 자격증은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하고, 자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『지방공무원임용령』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될 수 있고, 합격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※ 자격증 소지(유효)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(취득)일 기준으로 합니다.

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

시험명	응시원서 접수기간		시험 일정(예정)		
	기간	구분	시험장소 공고일	시험일	합격자 발표일
제1회 임용시험	2020. 12.15(화) ~ 12.17.(목)	필기시험	12. 21.(월)	12. 26.(토)	12. 28.(월)
		면접시험	12. 28.(월)	12.30.(수)	1. 6.(수)

※ 상기 일정은 시험실시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가.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접수기간

- 1) 교 부 처 : 철원군 홈페이지(www.cwg.go.kr)에 철원소식-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(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 포함)을 출력하여 사용
- 2) 접수기간 : 2020.12.15.(화) ~ 2020.12.17.(목), 근무시간 내 (09:00~18:00) *점심시간 제외
- 3) 접 수 처 : 철원군 자치행정과(본청 2층)
※ 우)24040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,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(인사담당자)
- 4) 접수방법 :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

- ❖ 우편 접수시 「우체국의 통상환증서(해당 금액상당)」를 구입 후 동봉하여 주시기 바라며, 2020. 12. 17.(목) 소인분에 한해서 접수합니다. ※ 9급 : 5,000원
- ❖ 등기우편 신청자는 접수마감일까지 우편을 통해 지원서류를 신청함을 유선으로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(☎033-450-5232).

나. 제출서류

- ① 응시원서(접수장소 교부 또는 홈페이지 다운받아 사용) 1부.
 -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(3.5cm×4.5cm) 사진 2매 부착
 - 응시수수료 : 5,000원
※ 응시자는 철원군 수입증지(5,000원권) 구입 후 원서 제출(구입처 : 군청 1층 민원봉사과)
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수급자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(증명서 제출자에 한함)
- ② 이력서 1부.
- ③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.
-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.
- ⑤ 자기소개서 1부.
- ⑥ 주민등록초본(주소 변동사항 포함) 1부. *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
- ⑦ 경력증명서(근무처별) 각 1부. (해당자에 한함)
- ⑧ 자격(면허)증 사본 1부. (필수자격증 : 전원제출, 가점자격증 : 해당자) * 원본지참
- ⑨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.
- ⑩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.
- ⑪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사본(재학생은 재학증명서) 1부.

가. 취업지원대상자(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)

- 1)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를 가산합니다.
- 2)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(직급/직류/임용예정기관)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3) 선발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
 - ※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,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(보훈상담센터 ☎ 1577-0606)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
나. 자격증 소지자(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)

1) 공통적용 가산점

-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통신·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구분	직급	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			
통신·정보처리분야	9급	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정보보안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정보보안산업기사	1%	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	0.5%
사무관리분야		컴퓨터활용능력 1급	1%	워드프로세서(1급) 컴퓨터활용능력 2급	0.5%

- ※ 통신·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되며, 워드프로세서 2급3급은 가산대상 자격증이 아님

다.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1) 응시원서 접수 시 가산점란 미표기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여 발생하는 결과는

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.

2)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,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.

3)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.

8

응시자 유의사항

가.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, 중복지원, 거주지 제한 미확인, 자격미비자 응시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응시자는 시험당일 **시험시작 40분 전까지** 응시표와 신분증 [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(주민등록번호 기재) 중 하나], **컴퓨터용 흑색사인펜**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

다.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전자통신기기(휴대폰, **스마트워치**, PMP, PDA, MP3, 무선호출기, 이어폰 등), 전산기기(전자수첩, 전자계산기 등) 등을 휴대할 수 없으며,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실 내 전면(前面)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시험시작 후 소지하였다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.

라.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에 있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,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,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,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, 연령·거주지·가점·학력·경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,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**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,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하며,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,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,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,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.**

마.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준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
바. **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**

사. 필기시험에서 과락(각 과목 40점 미만 또는 총점의 평균 60점 미만)이 있을 경우 불합격

처리되며,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서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. 자격증·면허증 등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4년 이내에 타지역 또는 타기관으로 진출을 제한합니다.
- 자.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철원군 홈페이지에 공고(게시)하며,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.
- 차.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제출서류 내용 허위기재, 임용결격사유,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또는 그 밖의 임용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.
- 카.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철원군청 홈페이지/시험정보에 공고하며, 시험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(☎ 033-450-52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